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6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9. 9. 6 최현덕의원 외 4인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9. 6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9. 17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정부의 행정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'99. 8. 1 일자 고성군 행정기구 조직개편(과 명칭변경) 공포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 부서를 새로 조정 정립하는데 있음.

3. 주요골자

-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 부서명칭 변경

상임위원회별 명칭변경(실과사업소)

| 해 당 위 원 회 | 당 초 | 변 경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회운영 위원회 | - | - | - |
| 총 무 위 원 회 | 행 정 과 지역협력과 새무회계과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|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 무 과 당항포관리사무소 | 8개 실과사업소 중 3개과 1사업소 명칭변경 |
| 산업건설 위 원 회 | 경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(농업기술과) |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(기술보급과) | 9개 과사업소 중 2과 명칭변경 |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성군 제2차 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실과·사업소별 명칭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 의안과 청원심사 등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9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